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17
----------	------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4월 2일 박기재 의원 외 13명
2.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4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박기재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 목록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규설치 등 때마다 별표 목록의 개정을 위해 비효율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별표를 삭제하고 시립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시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의 적용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인 별표를 삭제하고,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을 준용조항에서 삭제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동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의 명단을 별표로 규정하는 방식에서 시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관련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정당성을 기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의안번호 231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고시 방법을 변경하는 안 제3조 및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관련 조항의 정비를 통해 안 제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¹⁾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은 총 83개소임(‘20.1.9기준).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이 62개소로 가장 많으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14개소, 시민건강국 소관 7개소 순으로 집계되었음.

1) 개정 2020. 1. 9.

○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총 62개소의 시설 유형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노인, 노숙인시설이 있음.

- 세부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시설이 28개소로 가장 많은바, 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 양로원 2개소, 노인요양시설 7개소임. 다음으로 장애인시설은 총 21개소로,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개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개소와 장애인복지관 9개소 및 장애인체육시설 1개소로 분류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자활지원과 소관 노숙인 시설 7개소, 쪽방 상담소 5개소로 총 12개소와 지역돌봄복지과 소관 시립 종합사회 복지관 1개소가 있음.

〈표〉 복지정책실 소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시설유형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고덕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양로원
	◦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상계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양로원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노인요양시설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성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노인요양시설
	◦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37 (삼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노인요양시설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산본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노인요양시설
	◦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을 이원로 483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노인요양시설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섬밭로 313 (중계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노인요양시설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노인요양시설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청량리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검재로9길 45 (면목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시설유형
복지정책실 (장애인 복지정책과)	◦ 시립평화로온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장애인거주시설
	◦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시립중앙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중랑구 겸재로61길 81 (망우동)	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행복플러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성북구 화랑로 134 3층 (하월곡동)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시립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물판매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하월곡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번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번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번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시립장애인영능직업재활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107번길 14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복지정책실 (장애인 자립지원과)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2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관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 (상계6·7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관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관
	◦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2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관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73 (상계6·7동)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관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6·7동)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관
	◦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상계6·7동)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장애인복지관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2동)	발달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관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남가좌동)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관
	◦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동)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체육시설
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 시립은평의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구산동, 은평마을)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 시립양평쉼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송정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용답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노숙인 재활시설
	◦ 시립영등포보현의집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동2가)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갈월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시립돈의동쪽방상담소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돈의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 시립창신동쪽방상담소	종로구 종로50라길 31 (창신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 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	용산구 한강대로 379 (동자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용산구 후암로57길 35-15 (동자동)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 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	영등포구 경인로 823-2 (영등포동4가)	쪽방 거주민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은 총 14개소이며, 여성권익담당관 소관은 총 6개소로 여성 노숙인시설 2개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2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2개소임. 가족담당관 소관 시설은 아동 복지시설 5개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로 총 8개소가 있음.

〈표〉 여성정책실 소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시설유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노숙인생활시설
	◦ 시립영보자애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을 이원로 483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노숙인생활시설
	◦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장안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아동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아동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아동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아동복지시설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3층 (구로동)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악)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학대피해아동쉼터
	◦ 학대피해아동 쉼터(중랑)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학대피해아동쉼터
	◦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 치료센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	아동복지시설

- 시민건강국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 2개소 및 정신재활시설 5개소로 총 7개소의 시립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표〉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시설유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을 이원로 483	정신질환자 보호	정신요양시설
	◦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정신질환자 보호	정신요양시설
	◦ 누리봄	광진구 용마산로25길 10 (중곡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신재활시설
	◦ 새로봄터	은평구 연서로22길 4 (대조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신재활시설
	◦ 늘푸른집	도봉구 시루봉로 295-3 (도봉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신재활시설
	◦ 이음	강동구 천호옛12길 24-15 (성내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신재활시설
	◦ 동작아이존	동작구 국사봉길 109 (상도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	정신재활시설

-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은 본 조례의 별표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신규시설 설치 등 때마다 별표 목록 변경을 위한 비효율적인 조례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조례 제정(2000년)이후, 별표의 현행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총 12회 진행되었음. 향후에도 신규시설의 설치, 시설명 및 주소의 변경 등으로 별표 목록 현행화를 위한 반복적인 조례 개정이 예상됨.

〈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현황

구분	시행일
제정	- 2000.11.30
개정	- 2001.05.17
	- 2001.06.15
	- 2001.07.16
	- 2003.06.16
	- 2005.06.16
	- 2006.05.04
	- 2007.03.08
	- 2012.07.30
	- 2013.08.01
	- 2016.09.29
	- 2018.05.03
	- 2020.01.09

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관련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률”)」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가 있으나 법령과 조례 간 위탁기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법률 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조례 간 충돌에 따른 체계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6.>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0. 7. 16.>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2020. 7. 16.>

라. 세부 조례내용 검토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

-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를 통해 공개되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임.
- 별표 변경을 위한 빈번한 조례 개정은 비효율적이므로, 별표 목록을 삭제하고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본 조례 제6조의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관련 준용조항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기간 관련 규정인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은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에서 규정하는 위탁기간 ‘5년’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음.
-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률 우위의 원칙²⁾’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2) 이철용, 행정법1, 박영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등) ----- ----- ----- <u>시장이 고시로 정한다.</u>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④ (생략)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9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u>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조제4항</u> ----- ----- ----- ----- ----- -----.

마.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은 제3조의 별표 목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규설치 등 때마다 별표 목록의 개정을 위해 형식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표를 삭제하고 고시로 정하는 원안을 수용함.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의 적용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과 「서울특별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상이하여,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원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조례의 별표를 통해 공개하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법률과 조례 간 충돌의 소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관련 준용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쟁점사항은 없음.
- 신규시설 설치, 시설명 및 위치 변경 등 지속적으로 변경이 예상되는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시설체계 확립상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의 체계정당성 정비를 위해 상위 법령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례해석의 명확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입법조치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1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4월 02일

발 의 자 : 박기재,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소영, 김제리,
김호진, 김화숙, 문병훈,
오한아, 이광호, 이영실,
이정인, 조상호 의원(14
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별표 목록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규설치 등 때마다 별표 목록의 개정을 위해 비효율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별표를 삭제하고 시립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시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의 적용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인 별표를 삭제하고,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을 준용조항에서 삭제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와 같다”를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등) ----- ----- ----- <u>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④ (생략)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u>제10조부터 제11조까지</u> ,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9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u>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조제4항</u> ----- ----- ----- ----- ----- -----.